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야기

현행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대가의 산정은 「건설공사안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제33조에서 규정한 [별표7] 안전점검 대가 효율에 의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명시된 중요한 건설공사종류별 효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효율(%)	정기안전 점검 효율(%)	초기점검 효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건 축 물	5,000m ²	0.52	0.35	0.17
	10,000m ²	0.34	0.24	0.10
	30,000m ²	0.16	0.11	0.05
	50,000m ²	0.13	0.09	0.04
	100,000m ²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1. 정기안전점검 대가 효율은 별표 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교량이나 터널 등이 포함된 철도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비와 함께 위 기준에 의한 정기안전 및 초기점검 진단대가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낙찰된 건설회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회사와 다시 계약체결을 하여 진단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 요율구조는 건설공사의 각 시설물 종류별로 규격(길이나 면적)에 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규격별로 크거나 넓은 경우에는 점차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m 교량의 경우에는 요율이 0.66이나 1,000m 규격인 경우에는 0.11로 요율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 2조 1. 가. 및 나.에 의하더라도 시설물의 형태에 따른 “기본시설물” 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하고 “인접시설물” 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접시설물의 경우에도 기본시설물과 합산하여 하나의 시설물로 보지 않고 그 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시설물을 모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위 시설물별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정하면서 공사구간 내 위치가 상이한 별도의 교량이나 터널의 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하나의 시설물로

첨부(1)

보아 요율을 적용한 경우도 있고 또한 위 기본시설물과 같이 시설물별 각각 별도로 보아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정하여 공사비에 포함하는 경우 등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량 및 터널 등을 각각 시설물로 보아 대가를 계상한 경우의 금액에 비하여 교량 및 터널의 규격 전부를 합산하여 대가를 계상한 금액은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실점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2. 요율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협회 회원사의 관계인이 현장에 위치하는 시설물 별로 정기 및 초기점검의 대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설물이 떨어져 있음에도 각 시설물의 규격을 합하여 하나의 시설물로 보아 요율을 적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1AA-1909-659424, 2019.10.8)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 실시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교량의 경우에는 3차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량별로 3차례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 및 초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포함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교량별로 정기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안전점검 대가 또한 시설물별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 대가를 계상하고 정산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대책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정기 및 초기 점검은 안전에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관서에서는 법령의 근거를 둔 기준에 의한 적법한 대가를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너무 적게 계상하는 경우에는 정기 및 초기 점검 품질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계상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발주 시에는 제대로 적용하도록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관련 질의·답변사항 1부. 끝.